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

주체 96(2007)년 12 월 19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508 호로 채택
주체 100(2011)년 12 월 21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052 호로 수정보충
주체 106(2017)년 12 월 11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026 호로 수정보충

제 1 장 배등록법의 기본

제 1 조 (배등록법의 사명)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은 배등록과 관련한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배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원만히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.

제 2 조 (배등록의무)

배등록은 배소유 및 운영기관, 기업소, 단체와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및 과학연구를 하려는 다른 나라 당사자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.

국가는 배등록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.

제 3 조 (배의 국적등록원칙)

국가는 배가 하나의 국적을 가지도록 한다.

제 4 조 (등록된 배의 법적보호)

국가는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를 법적으로 보호한다.

제 5 조 (국기게양)

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한다.

제 6 조 (법의 적용대상)

이 법은 배등록기관과 배소유 및 운영기관, 기업소, 단체에 적용한다.

우리 나라에 배를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 당사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.

제 7 조 (이 법의 제외대상)

군함 및 경기용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.

제 8 조 (교류와 협조원칙)

국가는 배등록분야에서 국제기구,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.

제 2 장 배등록조건

제 9 조 (배등록조건을 갖출데 대한 요구)

배등록조건을 갖추는것은 배등록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.

우리 나라에 등록하려는 배는 정해진 배등록조건을 원만히 갖추어야 한다.

제 10 조 (등록대상의 배)

등록대상의 배는 다음과 같다.

1.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의 배
2.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다른 나라 배
3.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및 과학연구를 하려는 다른 나라 배

제 11 조 (조약에 따르는 배등록)

우리 나라 수역 또는 다른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및 과학연구를 하는 배의 등록은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.

제 12 조 (배이름과 선적항)

배는 하나의 이름과 선적항을 가져야 한다.

배이름제정과 선적항지정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데 따른다.

제 13 조 (배의 톤수제정)

배에는 배톤수규칙에 따르는 총톤수와 순톤수가 제정되여야 한다.

배의 총톤수와 순톤수를 정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.

제 14 조 (배의 호출부호와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)

정해진 배에는 호출부호와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가 있어야 한다.

배의 호출부호와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는 전파감독기관이 준다.

제 15 조 (배등록 및 폐선을 위한 기술검사)

등록하려 하거나 폐선하려는 배는 해사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 16 조 (배구입전 기술상태평가)

기관, 기업소, 단체는 다른 나라 배를 구입하려 하거나 1 년이상의 기간으로빈배용선하려 할 경우 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그 배의 전반적인 기술상태평가를 받은 다음 배구입 또는 빈배용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기관, 기업소, 단체사이에 배를 넘겨주거나 받

는경우에도 의뢰에 따라 배기술상태평가를 할수 있다.

제 17 조 (배소유 및 운영자)

배소유 및 운영자는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등록되여 배를 소유 및 운영하는 우리 나라 기관, 기업소, 단체 또는 다른 나라 당사자가 될수 있다.

제 18 조 (배에 승선하는 선원)

배에 승선하는 선원은 우리 나라의 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사관련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원만히 갖추어야 한다.

제 3 장 배등록의 신청 및 심의

제 19 조 (배등록의 신청 및 심의에서 나서는 기본요구)

배등록의 신청 및 심의는 배등록사업의 중요공정이다.

해사감독기관과 배를 등록하려는 당사자는 배등록의 신청 및 심의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.

제 20 조 (배등록의 신청방법)

배등록의 신청은 배소유 및 운영자가 한다.

배소유 및 운영자는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 배등록신청문건을 국내항해배와 국제항해배로 갈라 작성하여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.

배등록신청문건에는 배의 이름과 선적항, 총톤수와 순톤수, 종류, 호출부호,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, 소유관계, 기술제원, 신청목적과 내용, 기관명칭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기타 필요한 증명자료들을 첨부한다.

제 21 조 (배등록신청의 구분)

배등록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배를 새로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첫 등록신청을 한다.

첫 등록신청에는 우리 나라 수역에서의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이나 과학연구에 리용하려는 다른 나라 배,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수속중에 있는배, 수리, 폐선, 매매를 목적으로 정해진 장소에로 항해하려는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 하는 림시등록신청과 다른 나라에서 빈배로 빌려온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 하는 등록신청도 속한다.

2. 등록된 배의 이름, 선적항, 소유권, 구조, 항해구역 또는 기관명칭같은것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다.

3. 다른 나라의 국적취득, 행방불명, 침몰, 폐선 같은 리유로 등록된 배를 삭제하려 할 경우에는 등록삭제신청을 한다.

4. 등록된 배를 빈배로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경우에는 등록정지신청을 한다.

5. 배의 소유권을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소유권등록신청을 한다.
6. 배의 저당권을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저당권등록신청을 한다.

제 22 조 (배등록기준, 배등록심의의 구분)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에 준하여 배등록심의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.

배등록심의는 신청문건에 대한 심의, 배기술검사결과에 대한 심의, 배소유관계에 대한 심의로 나누어 한다.

제 23 조 (신청문건의 심의)

신청문건의 심의에서는 배의 이름, 선적항, 총톤수와 순톤수, 호출부호,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를 받은 정형, 배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갖춘 정형, 해당 기관의 경유를 받은 정형, 배소유 및 운영자의 등록관계 같은것을 심의한다.

제 24 조 (배기술검사결과의 심의)

배기술검사결과의 심의에서는 해사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은 정형을 심의한다.

제 25 조 (배소유관계의 심의)

배소유관계의 심의에서는 배건조 및 매매관련문건, 채권채무관련문건과 같은 배소유권증명문건들에 준하여 해당 배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의 배또는 다른 나라 당사자가 소유한 배인가, 우리 나라 기관, 기업소, 단체와 다른 나라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배인가를 심의한다.

제 26 조 (배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자료확인)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배소유 및 운영자 또는 해당 기관, 기업소, 단체에 요구하거나 국제기구, 다른 나라 해사기관 혹은 공증기관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다. 이 경우 배소유 및 운영자와 해당 기관, 기업소,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.

제 27 조 (배등록의 승인 또는 부결결정)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한 경우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배등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혀 배소유 및 운영자에게 통지한다.

제 28 조 (배등록의 재심의제기)

배등록의 부결통지를 받은 배소유 및 운영자는 결함을 퇴치한 다음 해사감독기관에 심의를 다시 해줄것을 제기할수 있다.

제 29 조 (의견제기)

배소유 및 운영자는 배등록의 심의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해사감독기관에의견을 제기할수 있다.

해사감독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료해하고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배의 등록 및 증서발급

제 30 조 (배의 등록 및 증서발급의 기본요구)

배의 등록과 증서발급을 바로하는것은 배운영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조건이다.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서 승인된 배에 대한 등록과 증서발급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.

제 31 조 (우리 나라 국적취득)

해사감독기관은 첫 등록이 승인된 배를 우리 나라 국적배로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내항해배와 국제항해배로 구분하여 등록한다.

제 32 조 (배자료의 등록)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부를 갖추고 배의 등록날자와 이름, 선적항, 총톤수와 순톤수, 종류, 등록번호, 국제해사기구번호, 호출부호,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, 소유관계, 배소유 및 운영자의 자료, 채권채무관계, 배의 연혁자료, 기술제원 같은 배자료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.

제 33 조 (배와 배소유 및 운영자의 식별번호등록)

해사감독기관은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배와 배소유 및 운영자의 식별번호가 없을 경우 국제기구로부터 배 또는 배소유 및 운영자의 식별번호를 받아 등록하고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34 조 (배등록증서의 발급)

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국적으로 등록된 배에 해당한 배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내항해배에는 유효기간이 4 년까지인 배등록 및 운항증서를, 국제항해배에는 유효기간이 5 년까지인 배등록증서와 최소안전정원증서, 배연혁기록부를 발급한다.

제 35 조 (림시등록증서의 발급)

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및 과학연구를 하려는 다른 나라 배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기간까지인 림시배등록증서를,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수속중에 있는 배, 수리, 페선, 매매를 목적으로 정해진 장소

에로 항해하려는 배에는 유효기간이 6 개월까지인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한다.

제 36 조 (빈배용선한 배의 증서발급)

다른 나라에서 빈배로 빌려온 배에는 유효기간이 2 년까지인 배등록증서를 발급한다.

필요에 따라 배소유 및 운영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수 있다.

제 37 조 (변경등록 및 증서발급)

해사감독기관은 변경등록이 승인된 배를 기관명칭, 배이름, 선적항, 소유권, 배구조, 항해구역 같은것이 변경된데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배등록증서를 다시 발급한다.

제 38 조 (배등록의 삭제 및 증서발급)

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삭제가 승인된 배를 배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내항해배에는 배등록삭제통지서를, 국제항해배에는 배등록삭제증서를 발급한다.

제 39 조 (배등록의 정지)

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배에 대하여 배등록부에 정지정형을기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빈배용선계약서에 밝혀진 기간만큼 빈배용선을 확인하는 문건을 발급한다.

제 40 조 (배의 강제삭제)

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라 하더라도 국가의 리익에 저촉되게 운영하였거나 배등록신청을 허위로 하여 등록하였다는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배등록에서 강제삭제할수 있다.

제 41 조 (배소유권의 등록)

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소유권등록이 승인된 경우 해당 배의 소유관계를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배소유권등록을 확인하는 문건을 발급할수 있다.

제 42 조 (배저당권의 등록)

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저당권등록이 승인된 경우 해당 배의 저당권자와 저당관계를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저당권자에게 배저당권증서를 발급한다.

제 43 조 (증서의 재발급)

배소유 및 운영자는 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서가 분실 또는 오손

되였거나 유효기간이 만기되였을 경우 신청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.

제 44 조 (국기게양과 표식)

우리 나라에 등록된 해당 배는 정해진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며 배이름과 선적항, 만재잠긴선, 등록번호, 국제해사기구번호같은것을 표식하여야 한다.

제 5 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

제 45 조 (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)

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.

국가는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.

제 46 조 (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)

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.

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사업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장악지도하여야 한다.

제 47 조 (배등록자료의 구비)

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의 등록척수, 등록톤수, 배기관출력 및 배수송능력 같은 배등록과 관련한 종합적인 자료를 갖추고있어야 한다.

해당 기관이나 국제해사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해사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배등록과 관련한 보증을 한다.

제 48 조 (등록된 배의 법규준수의무)

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우리 나라의 해당 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사관련국제협약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.

제 49 조 (배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)

배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.

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등록의 신청과 심의, 배등록증서발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.

제 50 조 (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)

이 법을 어겨 배등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, 기업소,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.